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9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광희 · 이주희 · 윤건영
박지혜 · 오기형 · 박해철
김 윤 · 장종태 · 송재봉
임미애 · 이재강 · 박정현
김문수 · 김우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

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한 구상)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대한 구상)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